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 (안)

### 철회 건의안

의안 번호	479
----------	-----

제안년월일 : 2001. 12. 12

제 안 자 : 산업경제위원장

#### 1. 주 문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기 위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 (안)의 철회를 건의하기 위함.

#### 2. 제안 이유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별 특색에 맞는 우수 외국기업은 물론 국내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음으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중 개정 (안)이 철회되어 균형적인 지역발전도모 및 지방산업기반을 부흥케 하고자 함.

#### 3. 참고 사항

“ 없 음 ”

---

## 건 의 문

존경하는 국무총리(재정경제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청와대  
경제수석)님께

국정에 다망하심에도 국토의 종합적인 균형발전은 물론 중요한  
지역현안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  
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  
니다.

우리 비수도권에 속해 있는 도민들은 지난 11월 28일 산업자원부  
에서 입법예고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안)에 대하여 경악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어 본 건의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수도권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업종을 20개에서 24개로,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를 투자비율  
50%이상에서 30%이상으로 확대하고

---

성장관리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공장 신설·증설 등 허용기간이 금년말까지 한시적인 기간을 2004년 말까지 연장 토록 하였으며 대규모 기업집단인 30대 그룹에 대한 규제완화로 과밀억제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에서 성장관리지역으로 이전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것으로서 개정(안)과 같이 개정될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동화의 가속화는 물론 지방 산업기반의 붕괴를 심화시켜 국가의 장래를 어둡게 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 우선 수도권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규제완화시  
첫째, 외국인투자기업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어 가뜩이나 어려운 비수도권의 지방경제는 더욱 도탄에 빠질 것이며 수도권 집중에 따른 교통, 환경, 교육문제 등의 교착화로 사회적 비용 증가에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므로 절대 개정되어서는 안됩니다.

둘째, 외국인 투자완화시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세제, 금융 등) 운영에 따른 막대한 재정지출 및 세수 결함이 우려되며 순수 국내기업과 지원 제도상의 형평성 문제에 따른 역차별 등으로 국내기업의 반발이 우려됩니다.

---

○ 또한 대규모 기업집단인 30대 그룹에 대해서도 다른 대기업과 동일하게 과밀억제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에서 성장관리지역으로 이전을 허용할 경우

첫째, 우리나라 경제의 70~80%를 점유하고 있는 30대 그룹의 역할과 기능을 감안할 때 30대 그룹의 성장관리 지역으로의 이전 허용은 수도권 과밀축발 등 파급효과가 엄청나게 클 것이며 건설교통부의 수도권기업 지방이전시책 및 각 자치단체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기업 유치와 기존 산업단지 및 신규로 조성중이거나 계획중인 단지의 미분양으로 지방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입니다.

둘째, 특히 미국 테러에 이은 아프칸 공격으로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나마 신규투자의 여력이 있는 30대 그룹에 대한 규제완화는 수도권 집중화로 지방경제침체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산업의 육성, 국가의 백년대계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입법예고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우리 150만 충북도민은 앞으로 정부의 어떠한 정책도 신뢰하지 않을 것이며 13개 비수도권 시·도 지역주민과 연대하여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천명하면서 다시 한번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반드시 철회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2001. 12. 15

충청북도의회의원 일동